

부산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나43248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20.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가단524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2019. 11. 7.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D에 대한 E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금속공사대금 40,000,000원의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1)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고,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피고는 제1심은 물론 당심에서도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음)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제1심판결문 2의 나.항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이 2019. 11.경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제의하면서 ‘원고는 C 및 주식회사 N과 납품시공거래를 함에 있어 발생한 채권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채권양도양수 받았음을 확인하오며, 추후 위 회수 채권으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으며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설령2) C에 대하여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와 관련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C이 채권자들 일부를 선별하여 그중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본래 목적은 아닌 점, ③ 특히 C이 부도나기 3일 전에 C의 여러 채권자 중 피고를 비롯한 일부 채권자들에 대하여만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처분행위로서 원칙적으로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민수, 판사 신민석, 판사 양우창

1) 피고가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2)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발생 원인을 밝히지는 않았다.